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766회 2023. 7. 17.(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2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19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 1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32호 가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 20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12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바리미로 21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7.17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3-7-17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33-11	인천광역시 서구 바리미로 21 (원당동)	20200720	"바리미"라는 옛 지명에서 착안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5-92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822 (가좌동)	20090710	인천에서 육고를 치르고 부두에서 노역을 한 바 있었던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호를 따 명명	
3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57-1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113 (오류동)	20081231	오름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4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511-1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644 (금곡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3-7-17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983-3 (원당동)	거울 말소	20081231	으뜸이 되는 담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15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7.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현행법에 맞게 정비
- 과태료 부과·징수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중복되거나 상이한 과태료 규정 삭제

3.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
- 「지역보건법」에 부과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 상 중복 규정한 사항을 삭제(제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중복되거나 상이한 조례 규정 삭제(제4조부터 제10조까지)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718-0601, 팩스 032-718-079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현행법에 맞게 정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고 이런 규정은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
- 「지역보건법」에 부과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 상 중복 규정한 사항을 삭제(제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중복되거나 상이한 조례 규정 삭제(제4조부터 제10조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도 첨부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과태료부과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전의 처분은 양도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	60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제34조제2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29조 및 제34조제2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 -----.</p>
<p>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삭 제></p>
<p>제3조(과태료부과 기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별표를 따른다.</p>	<p>제3조(과태료부과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제4조(의견제출) 구청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삭 제></p>
<p>제5조(과태료처분 통지) ① 구청장</p>	<p><삭 제></p>

은 제2조에 따라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해당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부터 30일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0일 이내의 기간 안에 15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제5조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

<삭 제>

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천지방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에 따른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관계법령 발췌

■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1519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인증기 공인 마모에 따른 등록 및 폐기

2. 공인 등록·폐기일 : 2023년 7월 17일

3. 등록 및 폐기 공인명 및 인영 : “별첨” 참조


등록 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종류	규격	등록사유	비고
1	가정3동장인 / 민원전용1 (인증기)	직인	2.1cm x 2.1cm	공인 마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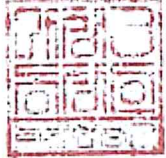

폐기 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종류	규격	등록사유	비고
1	가정3동장인/ 민원전용2 (인증기)	직인	2.1cm x 2.1cm	공인 마모에 다른 폐기	
2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가정3동민원전용2 (인증기)	직인	2.4cm x 2.4cm	공인 마모에 다른 폐기	

등록 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가정3동장인 / 민원전용1 (인증기)	공인 마모 따른 등록	2023년 7월 17일	

□ 폐기 공인 내역

폐기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 영
가정3동장인/ 민원전용2 (인증기)	공인 마모에 다른 폐기	2023년 7월 1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가정3동민원전용2 (인증기)	공인 마모에 다른 폐기	2023년 7월 17일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1532호

가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2023. 7.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최목적

- 가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요

- 일시 : 2023. 8. 3.(목) 15:00~16:00
- 장소 : 가좌1동 주민센터

3. 가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개요

- 사업유형: 특화재생형
- 위 치: 가좌동 140-1번지 일원 (면적: 152,602㎡)
- 사업기간: 2024년 ~ 2027년
- 주요내용: 거점공간조성, 주거환경정비, 공동체활성화 등

4. 의견제출 방법

- 가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2023. 8. 3.(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장소: 인천 서구 서곶로 323, 세민빌딩 4층 도시재생과/팩스 032-560-2749
 - 의견서 서식: 공청회장소 비치 및 서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참조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전략팀(☎ 560-31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 대상지

